

감정평가서

건명	김종순 소유물건(2025타경52942)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법보좌관 최송이
감정서번호	고산1-2508-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산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오 성 진

감정평가액	팔천이백만원정(₩82,000,000.-)					
의 퇴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법보좌관 최송이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6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종순 (2025타경52942)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5.08.12	2025.08.11 ~ 2025.08.12	2025.08.1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퇴)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 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호) 이	구분건물	1(호) 하 여	-	82,000,000
	합 계					₩82,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수인분당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월드아파트 상가3동 지하층 비5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및 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조건

없음.

3. 실지조사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 기간은 2025년 08월 11일 ~ 2025년 08월 12일로서 대상물건의 상황, 인근 지역 상황, 가격수준 등을 조사 하였습니다.

4.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8월 12일로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p>제7조 (개별물건기준원칙 등)</p>	<p>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p>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p>1.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p> <p>2.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3.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p>	<p>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p>

6.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가. 본건은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를 일체로 감정평가함에 있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다. 본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다른 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 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건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구분등기되어 있고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건물입니다.

나. 본건 구분건물은 호별 표시가 없는 상태로서, 호별 위치확인은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건축물현황도면을 참고하였으며, 본 구분건물은 지하층 비3호~비5호를 일단의 판매시설(DC백화점)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폐업한 상태로서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원상회복) 각 호별로 단독적인 효용가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본건은 현재 건물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대상물건 현황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38]		
건물명 동·호수	상가3동, 지하층, 비5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사용승인일자	1988 12. 17.
규모	지하1층/지상2층	대지면적	48,150.2m ²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기호	해당 동/층/호수	전유면적 (m ²)	공용면적 (m ²)	공급면적 (m ²)	전용률 (%)	대지권 (m ²)	비고
1	상가3동 지하층/비5호	57.6	13.903	71.503	80.6	45.7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	전유면적	거래금액	거래시점
				대지권		사용승인일
A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상가1동	지층 /00	19.68	55,000,000 (@2,794,715)	2024-04-20
				18.833		1989-03-31
B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상가1동	지층 /00	23.4	45,000,000 (@1,923,076)	2023-06-23
				22.393		1989-03-31

나. 비교사례 선택

위의 거래사례 자료 중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과 이용상황 등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인 “A” 를 본 평가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결정하였음.

4.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5. 시점수정

- 시점수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경기도 상업용부동산(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음.(24.04.20~25.08.12)

- 2024년 02분기 : 0.43
- 2024년 03분기 : 0.32
- 2024년 04분기 : 0.15
- 2025년 01분기 : 0.07
- 2025년 02분기 : 0
- 2025년 03분기 : 0(2025년 02분기 자료)

$$(1+0.0043*72/91)*(1+0.0032)*(1+0.0015)*(1+0.0007)*(1+0)*(1+0*43/91) \doteq 1.0088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거래사례 A와 기호 (1)비교]

조건	구분	격차율	적요
	세항목		
단지외부 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	0.70	본건은 사례에 비해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단지 외부요인이 열세임.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성 속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 의폭, 구조 등)등		
단지내부 요인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규모 및 최고층수	0.80	본건은 사례에 비해 공실을 등이 높은 상태이며 누수현상 등 단지 내부요인이 열세임.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공실을,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등		
개별적 요인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	0.90	본건은 사례에 비해 전유부분의 면적 등 개별적요인이 열세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 권의 크기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유사함.
비교치계	$0.70 \times 0.80 \times 0.90 \times 1.00$	0.504	종합적인 개별요인이 열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시산가액 산정

기호	거래사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 격차율		산정가액(원)
					사례면적 (㎡)	대상면적 (㎡)	
1	55,000,000	1.00	1.00883	0.504	19.68	57.6	81,848,100

Ⅲ. 참고가격 자료

1. 인근지역 가격수준

인근지역 내 유사 부동산의 전유면적당 가격수준은 @1,400,000원 ~ 1,450,000원/㎡ 내외 정도임.

2. 인근 유사물건에 대한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전유 면적	평가 목적	평가금액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a	본오동 872-6	안산석천빌딩	지층	189.48	담보	250,000,000 (@1,319,400)	2023-02-10
							1988-12-17
b	본오동 872-6	안산석천빌딩	지층	114	담보	146,000,000 (@1,280,701)	2023-02-10
							1988-12-1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감정평가이론 등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되, 인근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사례 등과 비교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동·층·호수	전유면적(m ²)	결정가액(원)	비고
1	상가3동 지하층 비5호	57.6	82,000,000	비준가액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상가3동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82,000,000	비준가액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38			1층	646.875			
				2층	646.875			
	같은 곳	872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48,150.2			
				(내)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비5호 판매시설	57.6	57.6		
				1.소유권대지권	45.76	45.76		
					----- 48,150.2			
					[토지, 건물 배분내역] 토지 : 32,800,000 건물 : 49,200,000			
합 계							₩82,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수인분당선)"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에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내 지하층 비5호로서(사용승인일:1988.12.17)

- 외벽 : 치장벽돌 및 타일 마감.
-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목판재 등.
- 창호 : 하이새시 등.
- 바닥 : 타일붙임.

(4) 이용상태

공실 상태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대체로 사각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속 상가의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25m , 동측으로 폭 20m, 서측으로 폭 8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저축),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저축), 소로2류(폭 8m~10m)(저축),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상록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상록초등학교),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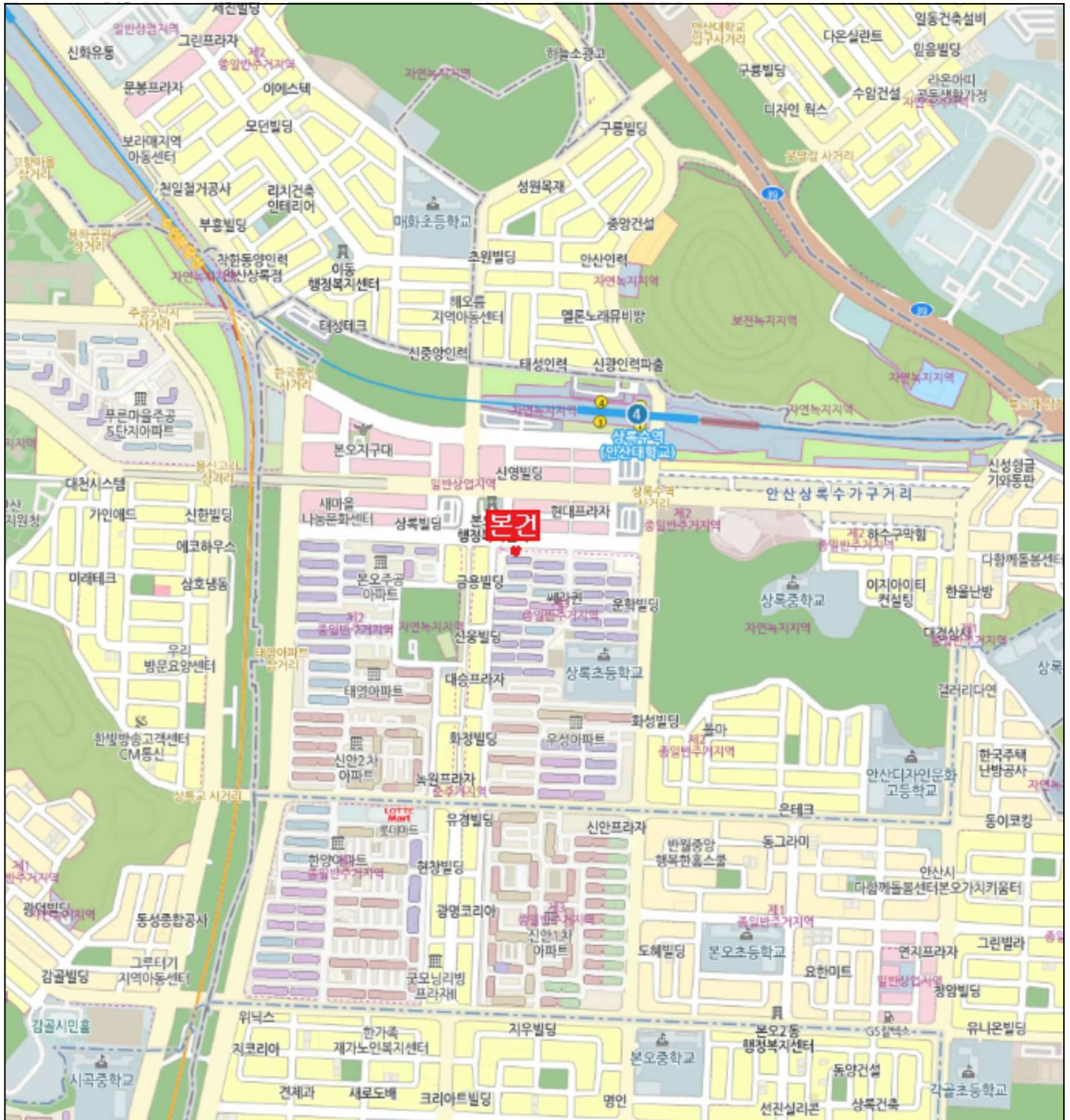
(2) 기타참고사항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본건은(지하층 비5호) 해당없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상가3동 지하층 비5호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상가3동 지하층 비5호

FREE SCALE



호실배치



3동 지하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상가3동)



본건 전경(상가3동)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상가3동)



주위 환경

사 진 용 지



지하층 비5호 입구



지하층 내부복도

사 진 용 지



지하층 비5호 내부



지하층 비5호 내부